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20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5월 4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‘(중)가산금’과 ‘납부불성실가산세’를 ‘납부지연가산세’로 통합한 변경 용어를 사용하되, 1천만원 이상 체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과 같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‘고액체납액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‘고액체납액’ 분류 시 ‘납부지연가산세’ 중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(종전 ‘(중)가산금’)를 제외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제4호).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납부지연가산세를”을 “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(가산금을”을 “(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 (<u>가산금을 제외한다</u>)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고액체납액”이라 한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(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-----</u>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